

예산총칙

201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72,502,316	17,175,069
일반회계	497,561,547	14,926,846
특별회계	74,940,769	2,248,223
공기업특별회계	72,865,544	2,185,966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3,388,867	1,001,666
하수도사업특별회계	39,476,677	1,184,300
기타특별회계	2,075,225	62,257
지하수특별회계	424,819	12,745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539,979	46,199
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	110,427	3,313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457,633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,152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(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)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| | |
|---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3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|
|---|--|